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윤 석 열 인

2024년 1월 30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 국 토 교 통 부 박 상 우 장 관

● 법률 제20175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제2항제2호 중 "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"를 "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폐차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)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폐차를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함.

<법제처 제공>